의안 번호	71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의 원 : 전홍표・권순재・김우진・박강우・박연정
이무식・장병운・지상록・진형익
하경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2024년까지 누적 168,564명으로, 전체 국내・외 입양아동의 67.3%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정체성과 기원을 확인하고 친생가족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입양기록의 누락・오류와 관련 자료의 분산 등으로 국외입양인이 가족을 찾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창원에서도 해외입양인들이 수년째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창원을 방문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정보 공개와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외 강제입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후책임과 인간의 존엄・정체성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를 국가의 사후책임이자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함.

○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경찰 등에 분산된 과거 입양 관련 기록을 조사·발굴하고 디지털화하여 통합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개인정보와 유전정보 보호를 전제로 DNA를 활용한 가족찾기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기록조사·친생가족 탐색·통번역·만남 중재 등을 연계한 전문 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함.

○ 국외입양인이 태어났거나 발견·보호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뿌리찾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해외입양 진상규명 결과가 기록회복과 가족찾기 및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적 국외입양 아동은 168,564명으로, 전체 국내·외 입양아동 250,400명의 67.3%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중·장년이 되어 자신이 태어난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나의 부모와 형제는 누구인가.”
“나는 왜 입양되었는가.”

자신의 기원과 가족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다. 국외입양인은 친생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태어난 국가와 문화권을 떠나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입양기록을 확인하며 친생가족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청구는 2021년 1,327건에서 2022년 2,043건, 2023년 2,71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당 3년간 전체 청구 6,087건 가운데 국외입양인의 청구가 5,776건으로 94.9%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족을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어렵다.

같은 기간 입양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만남을 원하는 경우는 16.4%에 불과했다. 물론 친생부모가 현재의 삶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만남이나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친생가족을 찾고 싶어도 기록이 없거나 부정확하고, 관련 자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찾지 못하는 국외입양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바꾸고 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입양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 관련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면서 과거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체계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법률에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수십 년간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입양 당시의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고, 관련 자료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입양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다면 중앙기관에 한 번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만으로 가족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창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70년대 마산 애리원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거쳐 벨기에로 입양된 박산호 씨와 박정술 씨는 친생가족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 고향 창원을 반복해서 방문하고 있다.

박산호 씨는 1973년 마산 애리원에서 발견되어 같은 해 벨기에로 입양됐고, 박정술 씨 역시 어린 시절 마산 애리원에서 생활하다 1971년 벨기에로 입양됐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입양기관과 옛 보육시설을 찾아다니고 전단을 배포하면서 가족의 흔적을 찾아왔으며, 2025년에도 다시 창원을 찾아 자신들의 가족을 찾는 데 창원시와 지역사회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창원시는 이미 2018년 이들이 고향을 찾았을 당시 언론과 시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가족찾기와 DNA 등록, 관계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에서 발견되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1968년 스위스로 입양된 차일숙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차 씨와 아들 조슈아는 2022년부터 수년째 창원을 방문하며 진해의 옛 보육시설과 전통시장, 행정기관 등을 찾아 가족의 흔적을 추적해 왔다. 2026년에는 창원시를 찾아 남아 있는 입양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친생부모를 찾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가족은 민간단체를 통한 DNA 검사와 먼 친족의 유전자 일치 가능성까지 추적하면서 가족을 찾고 있다.

이처럼 국외입양인의 가족찾기는 당사자가 직접 대한민국에 들어와 지방자치단체와 입양기관, 보육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기록을 확인하고 가족의 흔적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대한민국의 복잡한 행정체계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제도 속에서 해외로 보내진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까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가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히며,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해외 강제입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이러한 국가책임의 원칙을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가족찾기는 단순히 이름과 주소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 이전의 상담과 정서적 준비에서부터 기록 확인, 자료 발굴, DNA 검사와 친족 확인, 친생가족 접촉, 통역과 중재, 가족 상봉 그리고 상봉 이후의 심리·사회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언제나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친생부모가 만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가족관계 속에서 입양인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친생가족의 개인정보와 현재의 삶 역시 충분히 보호하면서 입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중재체계가 필요하다.

DNA를 활용한 가족찾기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십 년 전 기록이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 DNA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와 유전정보 보호를 철저히 전제로 하되, 국외입양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DNA 가족찾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와 국제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만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십 년 전 기록과 가족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기 어렵다. 국외입양인이 발견되거나 태어난 장소, 보호시설이 있었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찾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과거 보호아동 관련 행정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옛 보육시설과 지역 복지기관, 경찰관서, 지역 언론 및 주민 네트워크 등 중앙정부가 갖기 어려운 지역 기반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가족찾기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과 정보공개 및 사례관리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기록 발굴과 현장 조사, 통·번역, 지역사회 홍보 및 관계기관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외입양인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뿌리찾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이미 해외입양인을 위한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후서비스와 일정한 경우

체류・국적회복・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는 단순한 외국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입양과정에 대한 국가의 사후책임이자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 연결하고,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고, 필요한 통역을 제공하고, DNA와 기록을 통해 가족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제는 국외입양인에게
“당신이 직접 알아서 가족을 찾아보라”고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국외입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보장하고 가족・뿌리찾기가 더 이상 개인의 외로운 여정으로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를 국가의 사후책임이자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경찰 등에 분산된 과거 입양 관련 기록을 전수 조사・발굴하고 디지털화하여 통합적인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인의 입양배경과 기원에 관한 정보 접근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정보와 유전정보 보호를 전제로 DNA 등록·대조 및 국내외 유전자 정보 연계를 통한 가족찾기를 지원하고, 상담·기록조사·친생가족 탐색·통번역·만남 중재·상담 등을 포함한 전문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국외입양인이 태어났거나 발견·보호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뿌리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해외입양 진상규명 결과가 기록회복과 가족찾기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